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011

제출연월일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'징역형을 선고받은 자'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'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'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
- 5의2.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2조(영업의 허가) ①・② (생	제22조(영업의 허가) ①・② (현			
략)	행과 같음)			
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	③			
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		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				
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			
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				
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5.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	5.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			
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	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			
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	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			
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	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			
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	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			
	면제되지 아니한 경우			
<u><신 설></u>	5의2.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			
	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			
	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			
	기간 중에 있는 경우			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	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	